1.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4일

○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○ 상정일자 :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년 11월 24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)

□ 제안이유

○ 예산편성 전, 불필요한 용역이나 부실한 용역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,

○ 요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,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❑ 주요내용

○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용역 사전심의 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

○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강화 규정 신설하여,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용역부정행위시 제재처분 등 용역수행자의 책임성 제고함

○ 용역발주부서가 용역 진행 중간 점검서와 완료 후 평가서를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, 내실 있는 용역 수행체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신록휴)

○ 이 개정조례안은

► 예산낭비, 책임회피성 용역 등 부실용역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한 개선촉구[1]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('20. 1.)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, 용역의 정책반영률을 높이고, 실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용역이 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○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1) **윤영애 의원 시정질문**(제284회 임시회, '21. 7. 13.)
↳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관리체계 마련, 부실한 용역에 대한 패널티 적용방안 강구, 용역 결과 시홈페이지 공개 등 주문

►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, 조문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장(章)을 신설하여 구분하였음.

- 제1장 총칙, 제2장 대구광역시용역심의회, 제3장 용역의 관리

► **안 제2조에서는**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'정의'를 명확히 구분하였음.

► **안 제4조에서는**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음.

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심의사항에 더해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(1항5호),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(1항6호)을 신설하여,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음.

► **안 제4조의2, 안 제4조의3에서는** 용역심의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
< 용역심의위원회 개정(안) >

구 분		개정(안)	현 행
위원회 구 성 안 제4조의2, 안 제4조의3	위원수	**15명 이상 30명 이내 (위원장1, 부위원장1)**	15명이상 20명이내 (위원장1, 부위원장1)
	위원장	**기획조정실장**	좌동
	부위원장	**민간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**	좌동
	위원 자격	**① 시소속 4급이상공무원 ②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**	① 실·국·본부장 등 4명 ② 시의회 추천 2명 ③ 시정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	위원 임기	**2년(한차례 연임可) ※시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 직위 재직기간**	좌동

► **안 제4조의4에서는**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에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► **안 제4조의5에서는** 위원장의 역할과,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► **안 제4조의6에서는** 현행 조례에 없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, 위원으로서 역할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고, **안 제4조의7에서는**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음.

► **안 제5조, 안 제5조의2에서는**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한 간사 선임,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► **안 제8조에서는**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, 유사·중복성, 향후 활용계획 등을 미리 점검토록 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부터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.

► **안 제9조에서는** 용역진행상황 중간 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여, 향후 용역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,

► **안 제9조의3에서는**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윤리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징구,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가

점검표 제출,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,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과제 수행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음.

다만,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결과 유사도 점검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► **안 제10조에서는** 용역평가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, 용역수행 후 3개월 내에 주관부서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음.

❑ **용역평가 절차(개편안)**

자체평가[3월내] (주관부서)	(평가서 제출) ⇨	용역심의위원회 평가	(필요시 통보) ⇨	시장 (사후제재)

► **안 제11조에서는** 연구용역 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여,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「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, 시 홈페이지, 시 행정포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용역결과물을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(단, 비공개정보 제외) 용역의 실효성 증대를 기하였음.

► **안 제11조의2에서는** 시가 설치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

하였으며, 지도·감독 부서의 장에게 용역결과 공개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.

► **안 제12조에서는**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사항을 신설하여, 용역과제담당관(발주부서장)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등을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, 용역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,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.

► **안 제13조에서는**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조항을 신설하여, 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, 결과공개 및 활용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기록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며,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► **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6조의2, 안 제9조의2** 일부 조문에서는 조문 내용이 명확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,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음.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►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, 활용도 낮은 용역 결과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함. 정책연구 윤리

강화, 용역 결과 공개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연구용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최대 30명으로 늘렸고, 용역분야는 다양한데 이를 반영한 위원 선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	○ 용역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, 부족한 분야의 위원들을 더 보강하고,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임.
○ 국민권익위에서 용역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지침이 작년에 이미 내려왔는데, 이를 반영한 개정작업이 늦어진 이유는?	○ 작년 8월 권익위 권고가 있었지만, 제때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송구함.
○ 용역비 심사 개선도 필요하고, 면피성 용역도 많음. 또한 과다한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, 개정조례안 통해서 용역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.	○ 네, 기조실을 중심으로 용역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음